

#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9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. 1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2003년 7월 29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정으로 철저한 시설관리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2조(정의)와 제3조(위치)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변경 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연령 앞의 만자를 삭제하고, 일반인은 20세이상의 자,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.(안제2조제10호)
- 다.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조정 (안 별표2)
- 라. 제33조제9항 삭제(안 제33조제9항)

## 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2004-419호 (11.17~12.06)  
⇒ 의견 제출사항 없음

## 4. 본문내용 : 덧붙임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중 “만6세이상 만12세”를 “7세이상 13세”로 하고, 동조 제9호 중 “만13세이상 만18세”를 “14세이상 19세”로 하며, 동조 제10호중 “만 19세이상”을 “20세이상 64세이하”로 하고,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, 제2조 및 제3조 제목 및 내용을 각각 제3조 및 제2조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.

11.“노인”이라 함은 65세 이상의자를 말한다.

제33조 제9항을 삭제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8.“어린이”라 함은 초등학생과 <u>만 6세이상 만12세이하</u>의 자를 말한다.</p> <p>9.“청소년”이라 함은 <u>만13세이상 만18세이하</u>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</p> <p>10. “일반인”이라 함은 <u>만19세이상</u>의 자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-----<u>7세이상 13세이하</u>의 자를 말한다.</p> <p>9.-----<u>14세이상 19세</u>-----</p> <p>10.-----<u>20세이상 64세이하</u>-----</p> <p>11. “노인”이라 함은 <u>65세이상</u>의 자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위치) (생략)</p> <p>제33조(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및운영) (생략)</p> <p>① ~⑧ (생략)</p> <p>⑨이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2조(위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및운영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(삭제)</p>

<현행>

【별표2】

수영장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수강	자유수영	
	매일반	매일반	일일이용
일반인	50,000	40,000	3,500
청소년	40,000	30,000	3,000
어린이·노인	30,000	20,000	2,500

스쿼시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수강	자유연습	
	매일반	매일반	일일이용
일반인	60,000	40,000	8,000
청소년	40,000	30,000	6,500

- 주) ① 스쿼시 라켓대여시 대여료 10,000원 추가  
 ② “회원”이라 함은 1월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  
 ③ 3월이상 등록하는 회원은 10%, 6월이상은 20%, 1년이상은 30%의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.  
 ④ 20명이상 단체이용시 20%를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(1~3급은 보호자 1인포함)은 이용료 50%를 할인 받을 수 있다.  
 ⑤ 어린이는 만6세이상 만12세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교, 청소년은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인 자 또는 중·고등학교, 일반인은 만19세이상인 자를 말한다.  
 ⑥ 경로우대 대상은 만64세이상인 자를 말한다.

<개정안>

【별표2】

### 수영장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수 강	자유수영	
	매일반	매일반	일일이용
일반인	60,000	50,000	3,500
청소년	50,000	40,000	3,000
어린이·노인	40,000	30,000	2,500

### 스쿼시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수 강	자유연습	
	매일반	매일반	일일이용
일반인	60,000	40,000	8,000
청소년	40,000	30,000	6,500

- 주) ① 스쿼시 라켓대여시 대여료 10,000원 추가  
 ② “회원”이라 함은 1월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  
 ③ 20명이상 단체이용시 20%를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(1~3급은 보호자 1인포함)은 이용료 50%를 할인 받을 수 있다.  
 ④ 어린이는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 또는 초등학교, 청소년은 14세이상 19세이하인 자 또는 중·고등학교, 일반인은 20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.  
 ⑤ 노인은 6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.